

인천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1나55602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1나5560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19가단3019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1. 10. 12.

판결 선고 2021. 11. 1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19가단301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인천 서구 C 임야 2,092m² 중 위 건물의 대지 부분 195.2m²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일부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1987. 5. 2.' 다음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제10행의 '원고와 피고의 모 E은' 다음에 '1988. 10. 17.경'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의 'K는' 다음에 '1999. 12. 18.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8인을 상대로 R 등 토지 이외의 상속재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를, 제10행의 'L는' 다음에 '2001. 6. 18. 원고를 상대로 R 등 토지 이외의 상속재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를 각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 제6면 밑에서 제9행의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다음에 '중 각 일부 지분'을, 밑에서 제8행의 '위 법원은' 다음에 '2011. 11. 18.'을 각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 제6면 밑에서 제2행의 '이 사건 토지' 다음에 '중 각 일부 지분'을, 마지막행의 '위 법원은' 다음에 ' 2016. 2. 19.'을 각 추가하고, 제7면 제2행의 '선정자 L의 피고에 대한 소'를 '선정자 L의 원고에 대한 소'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피고 지분'을 '각 일부 지분'으로 고치고, 제11행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에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를, 제12행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15634)에서는' 다음에 '2019. 9. 26.'을, 밑에서 제6행의 '판시하였다.' 다음에 "위 판결은 2019. 10. 17.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각 추가한다.

사. 제1심판결 제8면 밑에서 제9행의 '100평을' 다음에 '피고에게'를 추가하고, 밑에서 제6행의 'E'을 'T'으로 고치며, 밑에서 제4행의 '내용의 진술서' 다음에 '(갑 제28호증)'을, 밑에서 제3행의 '보낸 편지' 다음에 '(갑 제26호증)'을, 제9면 제9행의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다음에 '이 사건 토지는'을 각 추가한다.

아.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이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91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원고와 명의신탁자인 피고(또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Q)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6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불법적으로 단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원고는 1998. 10. 17.경 어머니 E의 명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부지 100평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동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 100평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피고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98. 10.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반환하거나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각엽

판사현선헤

판사백규재

별지